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	기관위원장
람	

제1429호 2019. 4. 8(월)

차 례

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6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----- 1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6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----- 2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602호 인천도시관리계획(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(안) 열람·공고 ----- 4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610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(안) ----- 6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-61호
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

『주택법』 제15조(사업계획의 승인)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. 4. 8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사 업 명 :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1블록 공동주택(아파트) 신축
2. 사업주체 : (주)제이에스글로벌 (대표자 : 정현욱)
3.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
 - 가. 위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1블록
 - 나. 대지면적 : 76,618㎡
 - 다. 사업규모 : 연면적 206,187.8249㎡ (지하2층, 지상25층)
 - 라. 용 도 : 공동주택(아파트) 14개동 1,249세대 및 부대·복리시설
 - 마. 사 업 비 : 553,511,154천원
4. 사업기간 : 2019. 4. 30. ~ 2021. 11. 30.
5.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
 -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9-63호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,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. 4. 8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부여·변경 도로명주소 : 인천 서구 검단로 182 외 8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(변경)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유
		별 도 열 략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9.04.08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9 - 602호

인천도시관리계획 (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(안) 열람·공고

인천도시관리계획(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. 4. 8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I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2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3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있음)

가. 집배송시설용지(T2)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조서

기 정				변 경					
가구 번호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비 고	가구 번호	가구면적 (㎡)	획 지		
		위치	면적(㎡)				위치	면적(㎡)	비 고
T2-2	26,367.3	2	13,207.6		T2-2	26,367.3	2-1	4,285	
							2-2	3,302.6	
							2-3	1,653	
							2-4	1,653	
							2-5	2,314	

나. 집배송시설용지(T2)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가구번호	위치	변경내용	변경사유
T2-2	2→2-1·2·3·4·5	획지분할	효율적인 토지이용

4.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5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
II.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

1. 열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2. 의견제출: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및 도면: 게재 생략, 열람 장소에 비치
4. 열람장소: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(☎560-4763)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9 - 610호

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「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,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9. 4. 8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자활기관협의체의 전문성을 높이고 상시적인 협의체계 구축

2. 주요내용

- 자활기관협의체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3조)
 - 부위원장 : 위원 중 호선 → 자활업무 담당국장
 - 자활기관협의체의 전문성을 높이고,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 추가
 - 당연직위원 : 부위원장, 자활관련 부서의 장, 직업안정기관의 장, 자활사업 민간위탁기관장
 - 자활기관협의체 위원 위촉시 성별을 고려한 위촉으로 성별 편중 개선

3. 의견제출

-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(참조 : 자립지원과, 전화 560-5711, 팩스 560-2742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4. 참고사항

-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자활기관협의체의 전문성을 높이고 상시적인 협의체계 구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자활기관협의체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3조)
 - 부위원장 : 위원 중 호선 → 자활업무 담당국장
 - 자활기관협의체의 전문성을 높이고,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 추가
 - 당연직위원 : 부위원장, 자활관련 부서의 장, 직업안정기관의 장, 자활사업 민간위탁기관장
 - 자활기관협의체 위원 위촉시 성별을 고려한 위촉으로 성별 편중 개선

3. 참고사항

- 가. 개정안 : “별지 참조”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“별지 참조”
- 다. 예산조치 : “해당 없음”
- 라. 관계법령 : “별지 참조”

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”를 “자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”을 “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,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자활관련 부서의 장, 직업안정기관의 장, 자활사업 민간위탁기관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”으로, “구청장이 임명 또는”을 “구청장이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3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(종전의 제4호) 중 “및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0조의4제4항”을 “및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7호를 제5호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) ① (생 략)</p> <p>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단서 신설></p> <p>1. 「직업안정법」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대표자</p> <p>2. · 3. (생 략)</p> <p>4. 「상공회의소법」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자</p> <p>5. (생 략)</p> <p>6. 지역자활센터의 장</p> <p>7. (생 략)</p>	<p>제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자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.</p> <p>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,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자활관련 부서의 장, 직업안정기관의 장, 자활사업 민간위탁기관의 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-- 구청장이 --. 다만,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<삭 제></p> <p>1. · 2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</p> <p>3. ----- 및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-----</p> <p>4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5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p>